

Issue 003

التميمي و مشاركون
AL TAMIMI & CO.

KOREAN NEWS DIGEST

Latest Legal News and Developments from the MENA Region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알타미미 Korea Group입니다.

어느덧 저희의 Korean News Digest도 두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사태에 잘 대응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중동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통행금지 및 영업금지 해제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한 국가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중동국가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업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아국기업들이 기존 및 향후 사업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아국기업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올해 상반기 중동지역의 주요 법률 이슈를 정리한 세번째 Korean News Digest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Korea Group은 앞으로도 중동 전역의 법률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많은 성원 보내주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Korea Group 배상

주요 연락처



Omar Omar
Partner, Head of
Korea Group
o.omar@tamimi.com



Jiwon Ha
Senior Counsel
Dubai, UAE
j.ha@tamimi.com



Hyungmin (James) Song
Senior Associate
Riyadh, Saudi Arabia
h.song@tamimi.com



Dukgeun (Thomas) Yun
Senior Associate
Dubai, UAE
dg.yun@tamimi.com



Yoon Kang
Paralegal
y.kang@tamimi.com



Inhye Park
Paralegal
i.park@tamimi.com

Contents

Dispute Resolution

COVID-19 and its impact on arbitration	4	KSA Courts of Appeal: significant development in process for appeals	5
Coronavirus Considerations: Could it be Qualified as a Force Majeure Event in the UAE?	6	Invoking force majeure in Kuwait during the COVID-19 crisis	7

Corporate

DMCC Issues New Regulations – Action Required for those operating in DMCC	8	Company deregistration in the UAE from a legal and practical perspective	9
Keep calm: Invest Saudi	11	Oman's new foreign investment law	12
The Kuwait Companies Law: application and practice	13		

Real Estate & Construction

Foreign ownership rights and restrictions: who can own real estate property in Saudi Arabia?	14	A Piece of the Action: PPP Projects in Qatar	17
--	----	--	----

Korea Group Press Release

18

Korea Group News

21

COVID-19 and its impact on arbitration

-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19 사태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선언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해석이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랍에미리트에서 불가항력 관련 내용은 민사거래법 (Civil Transactions Law) 제 273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당사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일례로,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의 경우, 불가항력 요건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코로나 19를 예견할 수 없었고 (unforeseeable), 이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하여 (unavoidable)하여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이행이 불가능 (impossible) 해야합니다. 실제로 두바이 대법원 (Dubai Court of Cassation)은 2015년에 민사소송건 (Case No. 101/2014) 판례에서 불가항력 성립 요건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중재합의 (arbitration agreements)도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불가항력 조항의 해석·적용이 가능하며, 아랍에미리트 중재법 (Federal Law No. 6 of 2018) 제 8.1조는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중재합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의 효력에 의해 중재합의가 해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특정 사건이 당사자의 중재합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temporarily)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에 합의한 당사자는 중재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법원의 운영이 제한되면서 일부 소송은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중재절차는 이와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중재법 제 28조, 24.1조, 41.6조에서는 중재심리 및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tribunal deliberation) 시, 전자통신 수단 사용과 더불어 중재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중재합의에 전자서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ril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covid-19-and-its-impact-on-arbitration/>

KSA Courts of Appeal: significant development in process for appeals

- 지난 수년간 사우디의 사법 구조는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행정 법원의 산하에 있던 상사 법원이 독립적인 법원으로서 운영되고 있고, 노동 분쟁을 담당하는 노동 법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재판과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가 보편화 되었고, 판결문의 형식도 개선되었습니다.
- 또 한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항소심에서의 구두 변론이 가능해 졌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당사자가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하기 위하여 해당 1심 법원에 항소장 (statement of appeal)을 제출하면 1심 법원은 제출된 항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판결의 수정 혹은 유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을 유지하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항소 법원에 사건이 송부되고, 항소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후 1심 판결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오로지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구두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 공포된 Ministerial Circular는 항소 법원은 소송 가액이 1백만 사우디 리알 (미화 약 266,666 달러)를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사, 민사, 가사, 노동 사건 및 형사 사건에서 (혹은 이러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유 재량에 따라) 구두 변론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항소심에서 구두 변론의 기회를 가지지 위해서는 구두 변론을 요청한다는 점을 항소장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 구두 변론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항소 법원은 서면 심리만을 거쳐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항소심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두 변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ebruar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ksa-courts-of-appeal-significant-development-in-process-for-appeals/>

Coronavirus Considerations: Could it be Qualified as a Force Majeure Event in the UAE?

- COVID-19 사태로 인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개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UAE 민법은 불가항력의 개념과 범위, 효과에 대해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제273조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쌍무계약에서 해당 사정으로 인해 채무 이행이 불가능에 이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여기의 불가능에는 물리적, 법적 불가능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 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고, 그로 인해 일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에 따라 법원이 해당 당사자의 의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의 또다른 요건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정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 해당 사정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계약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들은 계약 체결 전의 상태에 준하도록 손해배상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rch 2020

<https://www.tamimi.com/news/could-it-be-qualified-as-a-force-majeure-event-in-the-uae/>

Invoking force majeure in Kuwait during the COVID-19 crisis

- 쿠웨이트에서는 COVID-19과 관련해 쿠웨이트 항만청 (Kuwait Port Authority, 이하 "KPA"), 통신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 이하 "MOC") 및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이하 "MOH") 등에서 조치들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 우선 KPA는 2020. 3. 20. 이란과의 선박 운행을 중단시켰고, MOC는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로부터의 외국 선박 입항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 MOH는 3월 6일부터 중국, 대한민국,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일본, 싱가포르, 홍콩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였고,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2주간의 강제휴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MOC는 3월 24일부터 선박대리점에게 30 영업일 간의 항해일지 사본과 화물운항이 이루어진 10개 항구의 출항면장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편 COVID-19과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불가항력 (Force Majeure)과 긴급사태 (Emergency Incident)가 논의됩니다. 두 개념은 모두 문제되는 상황이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을 것, 인간의 행위로부터 독립적일 것,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할 수 없었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 불가항력은 요건 충족시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손실을 분담시키는 긴급사태의 법적 효과와 구별됩니다. 쿠웨이트 민법은 제214조, 215조 및 제437조 등에서 불가항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불가항력의 법리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향후 COVID-19를 둘러싼 상황이 불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잘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ril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invoking-force-majeure-in-kuwait-during-the-covid-19-crisis/>

DMCC Issues New Regulations: Action Required for those operating in DMCC

- 두바이 DMCC 프리존에서는 올해 1월 2일자로 개정된 회사법 ("신규회사법")이 발효되었습니다.
- 신규회사법은 기존의 2003년 DMCC 회사법 ("기존회사법")과 관련규정을 대체하며, 그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 주식 (classes of shares)을 가질 수 있는 선택권 제공;
 2. 최소 자본금요건 삭제 (활동이 거의 없는 경우는 예외);
 3. DMCC에 등록된 회사들의 사무소 이전 허용;
 4. 면허의 자발적 정지/휴면(Dormancy) 개념 도입;
 5. 새로운 규정에 따른 최신 표준 정관 규정;
 6. 주주 요건을 반영하기 위한 정관 변경 가능 허용;
 7. "책임자/임원 규칙"을 도입하여 이사, 관리자 및 서기의 역할 및 책임 규정 가능;
 8. 신규 및 기존 지점의 지점 규제 및 설립 증명서 발급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 제공;
 9. 주주총회 수행 관련 유연성 제공;
 10. 회사서기 (corporate secretary) 임명 의무화를 규정;
 11. 회사 등기 관리 규정;
 12. 회사 청산시 옵션 제공
- 또한 DMCC는 신규회사법 준수를 위해 기존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기존 정관 개정;
 2. 회사서기 (corporate secretary) 임명;
 3. 회사 등기 작성 및 유지 관리.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rch 2020

<https://www.tamimi.com/news/dmcc-issues-new-regulations-action-required-for-those-operating-in-dmcc/>

Company deregistration in the UAE from a legal and practical perspective

- 아랍에미리트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는 법적으로는 청산 (liquidation), 관행상으로는 라이선스 취소 (deregistration)를 통해 폐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청산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회사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제하는 회사법 (Federal Law No. 2 of 2015 - Commercial Companies Law)을 따르지만, 라이선스 취소는 개별 토후국 내 라이선스 발급·취소를 담당하는 기관 (이하 "라이선싱 기관")의 관행상 절차이므로, 특별히 이를 규제하는 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청산과 라이선스 취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청산은 별도로 청산인 (liquidator)을 선임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반면, 라이선스 취소는 당사자가 직접 라이선싱 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라이선스 취소의 경우, 청산에 비해 관련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산은 자발적 청산과 비자발적 청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발적 청산은 LLC의 주주가 결의안을 통해 직접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에 합의하는 것이고, 비자발적 청산은 법원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되는 절차입니다.
- 라이선스 취소의 경우, 청산과는 달리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채권자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라이선스 취소 이후 LLC 주주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당사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취소 (deregistration)와 청산 (liquidation) 비교

	라이선스 취소 (deregistration)	청산 (liquidation)
필요 서류	1. LLC 라이선스 취소 및 폐업을 승인하는 결의안 (resolution) 2. 통신사, 우체국, 전기·수도 관리당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clearance) 3. 정관 (Memorandum of Association) 취소	1. LLC 청산 및 청산인 선임을 승인하는 결의안 (resolution) 2. 통신사, 우체국, 전기·수도 관리당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clearance) 3. 청산보고서 (liquidation report)
관련 절차	위 서류와 함께 라이선스 취소 비용을 납부하면, 관련 라이선싱 기관은 해당 회사의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폐업과 관련한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청산인이 선임되면, 2곳의 일간지에 해당 LLC의 청산을 45일간 공시하고, 청산보고서 (liquidation report)를 라이선싱 기관에 제출합니다. 이후, 라이선싱 기관에서 청산 확인서 (liquidation 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됩니다.

Ma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company-deregistration-in-the-uae-from-a-legal-and-practical-perspective/>

Keep calm: Invest Saudi

- 사우디는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던 사우디 투자청 (SAGIA)을 사우디 투자부 (Ministry of Investment, "MISA")로 승격시켰습니다. 사우디 투자부는 Vision 2030에 따라 사우디 투자청이 추진해 왔던 "One Stop Shop Service"를 계승하고, 외국인 투자와 내국인 투자의 동등한 취급,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사우디 투자부의 초대 장관으로는 Khaled Al Falih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Al Falih 장관은 에너지 산업부 장관, 보건부 장관 및 Aramco CEO를 역임한 관료 및 경영인으로서 외국인 투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우디 투자부를 이끌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사우디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COVID-19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COVID-19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민간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 70억 사우디 리알 (미화 약 18.7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우디 통화청은 금융업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50억 사우디 리알 (미화 약 13.3억 달러)에 이르는 금융지원안도 발표하였습니다.
- 사우디 정부는 COVID-19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keep-calm-invest-saudi/>

Oman's new foreign investment law

- 중동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활발해지면서 최근 오만에서도 외국인투자법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 ('FCIL'); 이하 "개정투자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 본 개정투자법은 오만내 투자프로젝트의 외국인 100% 소유 (기존에는 70%까지 가능)가 가능해진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신규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오만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Feasibility Study (사업타당성 분석)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오만법률상 로컬/오만 회사들이 누리고 있던 인센티브가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미국-오만간 FTA를 통해 미국국적의 투자자들이 누리던 혜택들 또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투자자들에게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제품 수입을 위해서는 별도의 에이전트/유통업자(distributor)의 등록이 우선되어야 했지만 본 개정투자법은 본 법률상 해당되는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별도 등록 없이도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제품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투자 이익의 환수, 투자프로젝트 운영회사의 주식 및 자산 양도 등이 보다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시행령, 규칙들은 올해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사태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면이 있지만 현재 오만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는 이미 신규투자관련한 지원서류를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omans-new-foreign-investment-law/>

The Kuwait Companies Law: application and practice

- 2016년 쿠웨이트 회사법이 새로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회사법은 구법에 비해 보다 실무에 가깝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 의도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먼저 개정 회사법은 연도별 재무재표를 제출할 회사의 의무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의하면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재무재표의 승인 권한이 규정된 반면, 쿠웨이트 산업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예산은 모든 지분권자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가 회사 재무재표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개정 회사법은 회사의 총괄관리자 (General Manager)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주간 계약 등에서 지분권자가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제103조). 실무상으로는 쿠웨이트 비즈니스 센터의 온라인 시스템상 관리자에 대한 추가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법상 총괄관리자의 해임에는 지분권자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실무상 수정사항의 승인을 위해 관리자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 한편 개정 회사법 제42조 및 제102조는 유한회사의 지분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쿠웨이트 로컬 파트너가 외국인 파트너를 위해 자신의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실무상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의 구체적인 경영활동에 있어서 회사 설립을 담당하는 산업부 외의 다른 정부기관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산업부 산하에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들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서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the-kuwait-companies-law-application-and-practice/>

Foreign ownership rights and restrictions: who can own real estate property in Saudi Arabia?

- 사우디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개발, 임대 및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정리된 내용들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걸프 협력 회의 ("GCC") 회원국 국적을 가진 개인들의 부동산 취득

GCC 국적자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는 GCC 회원국 국적을 가진 개인들이 사우디 내에서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개의 부동산은 토지일 수도 있고, 주거 지역 내에 위치한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3천 제곱 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소유자나 그의 가족들을 위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소유자는 소유권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고, 5년 이내에 건물을 완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토지는 국가에 수용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건물 완공 지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소명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GCC 회원국 국적을 가진 개인들은 주거 용도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소유나 임대는 Mecca 및 Medina에 위치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GCC 회사 (GCC 회원국 국적을 가진 개인들이 100%소유한 회사)의 부동산 취득

GCC 회사는 회사의 영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소유나 임대는 Mecca 및 Medina에 위치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GCC 회원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개인들의 부동산 취득

사우디 아라비아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의 주거 목적의 부동산 소유 (단, Ministry of Interior의 허가를 전제로 함)
2. 주거 목적의 부동산 임대.

위와 같은 부동산 소유나 임대는 Mecca 및 Medina에 위치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외국 회사 (GCC 회원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지분을 가진 회사)의 부동산 취득

GCC 회원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개인 혹은 법인)이 단 1%라도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외국 회사로 분류되므로 Ministry of Investment로부터 외국인 투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하여 최소자본금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설립시 사우디는 Anti-Fronting Law를 광장히 엄격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에 관한 법 제1조 및 외국인 투자 허가상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외국 회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1. 영업 행위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 또는 임대
2. 특별한 프로젝트의 경우 부동산 개발 목적의 부동산 소유
3. 허가된 프로젝트의 피고용인들에게 주거를 제공할 목적의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4. 사우디 아라비아에 거주할 법적 자격이 있는 피고용인들에게 주거를 제공할 목적의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

특히,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해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 부동산 투자회사의 총 투자금액은 3천만 사우디 리알(미화 약 8백만 달러) 보다 작아서는 아니됩니다. 이 금액은 각료회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Ministry of Investment 가 완공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 개발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부동산 소유나 임대는 Mecca 및 Medina 에 위치한 부동산 및 왕령에 의하여 외국 회사의 부동산 소유가 특별히 금지된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Mecca 및 Medina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의 소유 및 임대

일반적으로 사우디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아닌 이상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Mecca나 Medina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투자에 관한 법의 개정예에 따라, 외국인들은 (GCC 회원국 국적자 포함) 다음과 같은 경우에 Mecca 및 Medina 인근 부동산을 소유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1. 사우디 금융당국(SAMA)에 의하여 허가 받은 은행 및 부동산 파이낸싱 회사 (단, 해당 부동산은 사우디 금융당국에서 제정한 규정에 따라 사우디 국적자들에게 금융을 제공할 목적, 사무실이나 지사로 사용할 목적 또는 영업의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2. 부동산 영업을 수행하지 않는 상장회사 (단, 해당 부동산은 사우디 자본시장청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전부가 그 회사의 사무실이나 지사 혹은 영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
3. 각료 회의에서 정한 다른 법인들.

프리미엄 거주에 관한 규정 제2조는 프리미엄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은 99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Mecca 및 Medina의 인근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대사관

사우디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대사관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공관 및 대사관 직원들의 숙소가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각료회의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외의 부동산도 소유가 가능합니다.

7. 경제도시

사우디는 현재 여러 개의 '경제도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킹압둘라 경제도시 (서해안 Jeddah에 근접한 Makkah 지역에 위치), 지식경제도시 (Medina 지역에 위치), 프린스 압둘아지즈 빈 무사드 경제도시 (사우디 북부Ha'il 지역에 위치), 자잔 경제도시 (사우디 남서부에 위치) 등이 있습니다. 경제도시청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들은 경제도시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경제도시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경제도시청은 경제도시내에 설립된 외국 회사의 등록, 외국 회사의 토지 소유권 등록, 라이선스 발행, 물류나 창고 회사 등 서비스업자 승인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8. 사우디 증권거래소 (“Tadawul”)에 상장된 리츠 (REITs) 및 회사들

사우디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Tadawul에 상장된 리츠 및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자본시장청(CMA)은 2016년 리츠의 Tadawul 상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리츠는 총 자산의 75% 이상을 이미 개발된 수익용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리츠는 순이익의 90% 이상을 리츠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10% 미만의 순이익만이 재투자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 및 국가변혁 프로그램 (NTP)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이에 따른 GDP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바, 거시적 관점에서 리츠는 사우디 비전 2030 및 국가변혁 프로그램 (NTP)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배당이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리츠가 없었다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산투자의 이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사우디 자본시장청(CMA)의 적극적인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사우디 아라비아는 현재 GCC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많은 리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 및 국가변혁프로그램 (NTP)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부동산 산업 등 사우디 산업 전반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은 부동산 산업에 있어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ril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foreign-ownership-rights-and-restrictions-who-can-own-real-estate-property-in-saudi-arabia/>

A Piece of the Action: PPP Projects in Qatar

- 카타르는 최근 다수의 PPP 사업을 도입하여 카타르 건설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국가비전 2030에 의하면 총 850억 달러의 발주규모를 예정하고 있고 오일 가스 프로젝트에서만 이미 120억 달러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특히 PPP 법이 지난 2019년 4월 카타르 의회에서 승인되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PPP법에 따르면 BOOT, BOT, BTO, OM 등의 사업방식을 통한 사적 부문의 정부 부지에 대한 장기간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PP법은 카타르의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PPP가 카타르 국가비전 2030과 카타르 월드컵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카타르에서는 처음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PPP가 추진되고 있는데, 총 10억 달러 규모로 45개의 신규 공립학교가 34,000명의 학생들을 위해 건축될 계획에 있습니다.
- 또한 카타르 정부는 PPP 사업에 대한 내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 소비자 보호법 등 법령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카타르 정부의 PPP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외국기업의 사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유치와 경제 발전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January 2020

<https://www.tamimi.com/law-update-articles/a-piece-of-the-action-ppp-projects-in-qatar/>

Korea Group Press Release

알타미미 설립자 Essam Al Tamimi, 아랍에미리트 법상 불가항력의 법리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칼럼 기고

포커스

포커스

Essam Al Tamimi 특별기고

‘코로나19’, 불가항력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록다운(lockdown)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동 로뎀 알타미미(Essam Al Tamimi)가 코로나19와 관련, “불가항력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심세에이르티(UAE)에서 한국자 신성재 공유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한국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일반 국제계약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 알타미미의 분석을 알타미미 한문명의 도움으로, 전문 번역해 게재한다. 영문 원고의 제목은 “Coronavirus can we rely on Force Majeure to terminate contractual agreements?”이다.

이탈관 '리더 100만' 중 1명

하버드 로스쿨(LLM)에서도 공부하고 Clifford Chance 런던 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알타미미는 1989년 고국인 UAE의 샤르자(Sharjah)에서 비서 1명을 데리고 개인 법률사무소를 시작, 로뎀 알타미미를 변호사 수만 400명이 넘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독보적인 대형로뎀으로 키워낸 주인공이다. 그는 여전히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소송과 국제중재 분야에서 최고와 분쟁해결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를 도와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제·개정 등 입법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9년엔 토크쇼(Khaddon) UAE 행정청정 등과 함께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아랍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편집자

코로나 바이러스(Coronavirus)는 개인 기업 정부 차원을 넘어 전 세계에 걸쳐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은 관련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원자재 및 제품의 수급은 가능할지, 그간 체결한 각종 계약상 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 등과 같은 중요한 경영상 판단을 해야만 하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관광(Hospitality), 스포츠, 문화 등의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각종 계약의 취소, 연기, 지연 등을 이미 목도한 것은 물론, 불행히도 전 세계적인 실각 대란이 불가피한 것임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기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지며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겪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각 단계에서의 법률 분석 필수

이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기업과 기업이 체결한 각종 계약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각 단계에서의 법률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업무를 지속할 것인지, 대금 지급을 유예 및 중단할 것인지,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무엇보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 행해져야 할 조치가 과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채권자와 채무자, 거래처와 고객사 등의 관계에서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용·장구를 알아보고 유지하는 것과 다양한 반응들을 수용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하다. 특히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 기관, 공장 그리고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통제 제재를 내린 경우의 예를 든다면, 이는 일련 설계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또한 그 불가항력이 장기화하는 경우 그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중동 국가들은 대륙법 체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방법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각자의 법률시스템과 분쟁 해결 절차 및 관할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 역시 상이하다. 많은 서방국가의 경우 영미식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대륙법(Civil Law) 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 편의를 위해 본 기고문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법상 불가항력의 법리와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UAE 법률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명시적인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불가항력 조항이 목적인 바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계약에서 불가항력은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로 규정되는데, 이는 특히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불가피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가항력의 면제 규정상 당사자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UAE 민법(Civil Transaction Law No. 5 of 1985) 제27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쌍방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에서, 불가항력이 일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2) 일방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의 해당 부분은 소멸되며, 이는 계속적 계약의 일시적 불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도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하여 제273조를 적용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약 및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사유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1. 계약, 의무 또는 활동이 코로나19의 현 상황에 직접 영
2.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이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



중동 로뎀 Al Tamimi의 설립자인 Essam Al Tamimi 회장

향을 받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플라스틱 컵을 제조 및 공급하는 공장이 필요 부품을 계속 조달 받고 공장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에 차질이 없는 경우라면, 공장의 생산은 코로나19의 불가항력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불가항력 사유가 쌍방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본질 및 필요 부품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는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게 된다(In the event the work, contracts or activities are not directly and wholly impacted by the current state of COVID-19, for example a factory that is producing and supplying plastic cups continues to be able to get the components required to make the cups as well as continue to have the labour force necessary to operate the factory - in this scenario the production of the factory has not been affected by the Force Majeure situation of COVID-19. Accordingly, the contractual obligations will continue and remain effective as the Force Majeure event does not apply to the nature of the activity and the availability of all components necessary for both parties to implement their contractual commitments).

알타미미 설립자이자 회장인 Essam Al Tamimi가 코로나 19 사태 관련하여 작성한 “불가항력을 사유로 한 계약 타절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칼럼이 국문으로 전문번역되어 리걸타임즈에 특별기고문의 형식으로 게재되었습니다. Essam은 본 칼럼에서 장기화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에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지고,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 상 업무를 지속할 것인지,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등 각 단계에서 법률분석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 당사자가 취한 조치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정당화 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의 면책규정은 관련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Essam은 이와 관련하여 아랍에미리트 민법(Civil Transaction Law No. 5 of 1985) 제 273조를 언급하며, 쌍방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일방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일부 이행 불능의 경우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불가항력이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계약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불가항력에 대한 판단기준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령 및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산업 및 직종이 타격을 입었고, 이로 인해 사업활동 시 리스크 및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ssam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당사자가 소송, 중재 등의

법적 절차 없이 모든 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최선이고, 부득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아국기업들이 이미 수행 중인 대부분의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추후 사업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ssam Al Tamimi의 칼럼 전문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39> (국문 - 리걸타임즈)
- <https://www.tamimi.com/news/coronavirus-can-we-rely-on-force-majeure-to-terminate-contractual-agreements/> (영문 - 칼럼 원문)

알타미미, NH 투자증권에 아랍에미리트 역대 최대 규모 에너지 투자관련 자문

알타미미, NH투자증권 1.6조 가스관 투자 자문

중 동 로펌 알타미미(Al Tamimi)가 지난 6월 17일 계약이 체결된 아랍에미리트(UAE)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NH투자증권 등 투자자 측에 자문했다고 밝혔다. UAE의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가 보유한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라스발(SPC)의 지분 49%를 101억달러(약 12조 2,000억원)에 매입하는 거래로, NH투자증권을 포함해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등의 투자운용사와 연기금 등 6곳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 NH투자증권이 보유하게 되는 SPC 지분은 약 6%, 투자금은 약 1조 6,000억원이다.

알타미미 한국팀은 “본건 거래는 올해 에너지업계의 최대 투자계약이자 UAE의 역대 최대 규모 에너지 투자이며, NH투자증권이 투자하는 1조 6,000억원은 단일 거래로는 국내 증권사가 조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금”이라고 소개했다.

컨소시엄은 총길이 982.3km에 이르는 38개 파이프라인의 임대권을 소유하게 되며, 송유관 운영 관리와 자본 지출 등은 ADNOC가 책임진다.

하지원 변호사 등 포진

알타미미 한국팀엔 하지원 뉴욕주 변호사와 송형민, 윤덕근 변호사 등 한국계 변호사 3명이 포진하고 있다. **LT**

저희 알타미미는 최근 아랍에미리트 토후국 아부다비의 국영석유회사(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 이하 “ADNOC”)가 NH투자증권을 포함한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각국의 투자운용사, 연기금 등 6곳 (이하 “컨소시엄”)과 체결한 약 100억 달러 (한화 약 12조원)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투자 계약에서 컨소시엄 측에 자문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올해 에너지업계의 최대 투자계약이자 아랍에미리트 역대 최대 규모 에너지 투자로 ‘리걸타임즈’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특히 NH 투자증권이 투자하는 1조 6,000 억원은 단일 거래로는 국내 증권사가 조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 대체투자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대표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천연가스 생산(upstream gas) 부문의 투자 관련하여 규제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법령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알타미미는 컨소시엄의 계약 상대방인 ADNOC이 규제기관이자 천연가스 생산자로서 계약에 적용가능한 법령 및 전반적인 계약 관련 유의사항을 검토하여 본 투자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건 거래 이후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UAE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 한국발 투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리걸타임즈 기사 전문: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75>

알타미미 한국팀 변호사 3인, 중동지역 최신 법률동향 기고

저희 알타미미 한국팀 변호사 3인 (하지원 변호사, 송형민 변호사, 윤덕근 변호사)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에서 선임하는 지역전문가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해외시장뉴스 등 KOTRA 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동지역의 최신 법률동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고하며 국내·외 관계자분들께 현지 법률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팀을 이끌고 있는 하지원 변호사는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지난 2018년 9월, 일부 분야에 한해 외국인의 100% 지분보유를 허용하는 개정법 발표 이후의 실제 적용 사례 및 동향, 시사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된 투자법은 아랍에미리트 연방 차원에서 발표된 법령이지만, 실제 적용 시에는 개별 토후국의 기업규제 부서인 경제개발부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이하 "DED")의 권한에 따라 적용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하지원 변호사는 아국기업이 본 외국인투자법을 통해 현지 진출 시, 실제 법률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무적인 허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 및 대비하도록 하고, 개별 토후국의 DED의 조치를 꾸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사무소에 상주 중인 송형민 변호사는, 올해 4월 공표된 "사우디아라비아 동산담보법 및 상사질권법 개정"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송형민 변호사는 본 기사를 통해 담보목적물, 담보권의 설정 및 효력과 더불어 상사질권법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아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던 담보권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윤덕근 변호사는 쿠웨이트 진출기업 및 현지직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쿠웨이트 노동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기고하였으며, 해당 기사에서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강제하거나 경영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현재 쿠웨이트 내 법적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가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윤덕근 변호사는 현재 쿠웨이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 스마트시티 수출의 첫 사례로 추진 중인 압둘라 신도시 (South Saad Al Abdullah City) 개발사업과 더불어 쿠웨이트 진출을 희망하는 아국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아랍에미리트 외국인투자법 개정 발표 이후의 실제 적용 사례 및 동향, 시사점" (하지원 변호사) <https://bit.ly/2ZPOm0U>
2. "사우디아라비아 동산담보법 및 상사질권법 개정" (송형민 변호사) <https://bit.ly/2WOgijN>
3. "쿠웨이트 노동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윤덕근 변호사) <https://bit.ly/3fOmdga>

Korea Group News

1. 알타미미 한국팀, 사우디 법률가이드 “Doing Business in Saudi Arabia” 개정판 출간



알타미미 한국팀은 2018년 2월 공식적으로 사우디 법률가이드 “Doing Business in Saudi Arabia” 출간 이후, 올해 5월에 개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첫 출간 이후, 약 1년 반 동안의 주요 법령 개정내역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체계, 투자, 수출입, 회사설립, 고용, 조세,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쟁해결 등 아국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법률적 쟁점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최종 감수를 맡은 송형민 변호사는 알타미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사무소에 상주하며,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 젠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북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이드북 전문 (바로열기): <https://bit.ly/36C7uB9>**

2. 윤덕근 변호사, 건설부문 관계자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두 차례 발표

지난 5월 20일, 윤덕근 변호사는 국제건설법소사이어티 (Society of Construction Law; 이하 “SCL”)가 개최한 “코로나사태와 관련한 해외건설현장 핵심쟁점 15”를 주제로 하는 화상 세미나에서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에 대한 중동국가들의 준거법상 법리”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윤덕근 변호사는 SCL Korea가 7월 22일에 “해외현장 핵심쟁점에 대한 세미나”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중동국가별 불가항력 조항 및 예외적인 상황 (exceptional circumstances)의 개념과 공사계약의 타절 (termination) 요건”에 관해 심도있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해외건설협회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대한상사중재원 (KCAB International), 홍콩국제중재센터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한국플랜트산업협회 (KOPIA), KOTRA 해외수주협회의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저희 윤덕근 변호사는 건설·분쟁전문가로서, SCL Korea에서 개최예정인 다양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중동 관련 건설이슈를 관계자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SCL Korea 웹사이트 및 5/20일 화상으로 진행된 윤덕근 변호사의 발표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CL Korea 웹사이트: <http://www.sclkorea.org/>
- 윤덕근 변호사 발표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에 대한 중동국가들의 준거법상 법리): <https://www.youtube.com/watch?v=cpysZxbG-Xk>

3. 하지원 변호사, HILS 재학생 대상으로 강의

하지원 변호사는 지난 5월 20일, 모교인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이하 “HILS”)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HILS 포럼에 참석하여 HILS 후배들을 대상으로 “Working as a foreign lawyer in the Middle East – pathways, opportunities and career guidance for young lawyers”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본 포럼에서 하지원 변호사는 중동지역의 법률시장 현황과 더불어 현재 중동에서 활동중인 외국변호사로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며, HILS 후배들을 독려하였습니다.

التميمي و شركوه
AL TAMIMI & CO.



@AlTamimiCompany



Al Tamimi & Company

www.tamimi.com